

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모집공고는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23년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개요	주관기관	
		선정 규모	운영비 지원
예비창업 패키지	•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해 사업화자금,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27개 내외	정부지원금 3.8억원 내외
초기창업 패키지	•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시장안착을 위해 사업화자금, 실증 및 판로개척, 초기 투자유치 등을 지원	20개 내외	정부지원금 4억원 내외
창업도약 패키지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 글로벌시장 진출 및 후속투자유치, 대기업 협업 등을 지원	13개 내외	정부지원금 4억원 내외

* 선정규모와 운영비는 예산안 확정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요건, 권역별 선정 규모 등 세부 내용은 '모집 세부계획' 참조

□ 신청 자격

-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대학, 민간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참여 가능
 - * '신청기관 - 협력기관' 구조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협약은 전담기관과 신청기관(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집행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
- 신청기관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중에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신청 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 (교육부, '22.6.3. 발표) ** 본교 및 분교 (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 ('23.1.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19일(월) ~ 2023년 1월 9일(월) 16:00까지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 (www.k-startup.go.kr) →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① 회원가입(신청기관 대표자 명의)* → ② K-스타트업 로그인 → ③ 사업신청 클릭 → ④ "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주관기관 모집공고" 클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⑥ 기본정보(일반현황 및 인력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300MB 유의) → ⑧ 제출 → ⑨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 -사업신청현황' 확인)

*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 진행

**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접수 필요

- (제출서류)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전담조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단계 평가 (① 서류 → ② 발표) 실시,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대해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요건검토** : 전담 조직 구성, 재원(대응자금, 투자금), 공간(사무실) 등 주관기관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 **발표평가**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기관의 보유 자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시간 :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화상 평가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의사 결정이 가능한 센터장급 또는 본부장급 이상인 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단계별(서류 및 발표)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
 -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유의 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별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의 장(협력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신청 기간('23.1.9(월), 16:00) 내 끝히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응자금 확보는 협약 시작일 이후 6개월 이내, 전담조직 설치 등 그 외 신고요건은 3개월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기한 내 신고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신청기관에서 일괄 관리·집행(협력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

** 협력기관과 참여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기능을 수행하거나 "OO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응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 사업 선정 이후 협약 기간 내에 대응자금 및 투자금 미집행 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주관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6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사업부서 담당자

사업명	담당 기관(부서)	문의처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01, 1804, 1805
초기창업패키지		☎ 044-410-1831, 1845, 1838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진흥원 (창업도약실)	☎ 044-410-1861, 1862, 1863

※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Quick Menu - 상담하기)

1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목적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정 규모 : 총 27개 내외

<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규모(안) >

(단위 : 개)

권역	일반분야						특화분야		합계
	서울권	경인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권	동남권	여성	소셜벤처	
규모	5	5	5	4	3	3	1	1	27

* 선정평가 결과 및 권역(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역별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운영 기간 : '23년 ~ '26년 (4년간, 2년+2년)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연 단위 협약 기간 15개월 내외)

 신청요건

①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 (대용자금) 매년 9천만원* 이상의 대용자금을 투입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예비창업자 지원

* 대용자금 의무 투입금액은 연차별로 증감할 수 있음

- 대용자금 총액 중 5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투입해야 하며, 필요시 50% 이하는 사무실 임차료 등 현물*로 대용 가능

* 주관기관 협약 기간 내 전담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가능

< 대용자금 구성 비율 (예시) >

현금 (A)	현물 (B)	합계 (C=A+B)
45백만원 이상 (50%~100%)	45백만원 이하 (50%~0%)	90백만원 (100%)

- (투자재원) 매년 1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선정된 예비창업자(창업기업)에 대해 투자 실행

- 주관기관이 자체 조성하거나 민간 VC 등을 통해 예비창업패키지 전용 투자재원을 운용하는 경우 인정

* 조성된 투자금은 당해연도에 선정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자에게 투자되어야 함
** 특화분야 주관기관의 경우 내·외부 투자재원 조성 협의 시 해당 분야(여성, 소셜벤처)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에 투자

※ 내·외부 재원 투입 시, 협약 기간 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기업)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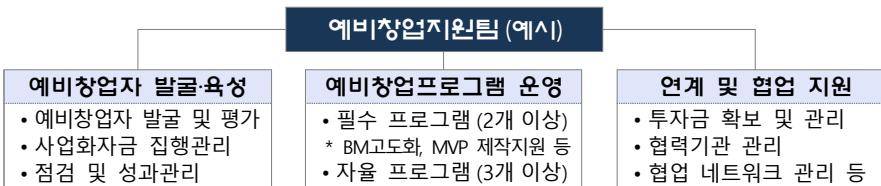
* 대응자금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보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 재원을 미확보하는 경우 주관기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② 예비창업패키지 전담조직 설치·운영

- (전담조직 설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팀, 부서 등)을 설치·운영

- 예비창업자 발굴, 예비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운영 기능을 전담

-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필수 구축 (33m²(10평) 이상)



-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의 장(1인)과 전담인력(4인 이상)으로 구성

- 전담조직의 장 :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주관기관의 장)로서 창업(또는 창업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4인 이상 필수 구성하고, 그 중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60% 이상 구성

* 전담인력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을 의미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①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사업화 자금 집행관리·정산, 점검, 성과평가, 지원종료 후 추적관리 등

< 주관기관 분야별 지원대상 >

일반분야	특화분야	
	여성	소셜벤처
전 기술분야 예비창업자	여성 예비창업자	소셜벤처* 분야 예비창업자

* 소셜벤처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분야로,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판별기준 [참고]을 준수하여야 함

② 예비창업프로그램 운영 (필수 2개 이상 + 자율 3개 이상)

* 특화분야 신청기관은 해당 분야(여성, 소셜벤처)를 고려하여 창업프로그램 구성

- (필수 프로그램) 3개 유형 (①BM 고도화, ②MVP 제작, ③후속연계 지원)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유형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율 프로그램) 신청기관의 강점·전문성, 예비창업자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3개 이상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비창업자 발굴 : 지역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시) 탈락자 멘토링, 창업 공모전, 창업포럼,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

- 사업화 지원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시) 코칭데이,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MD 상담회, 마케팅 지원 등

** 단순 행사, 외부 용역사 일임, 기관 간 네트워크 등 일차원적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고도화된 운영 방법 및 지원내용을 제시

③ 기타 수행 필요사항

- (전담멘토 매칭)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전담멘토를 예비창업자와 1:1로 매칭하여 경영·기술 자문 지원
- (창업상담창구 운영)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 상담창구 운영(주 1회 이상 / 유선·대면)
 - * 창업지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 창업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회계·법률 등 전문상담 요청시 전문가 매칭 상담(주관기관별 전문가 Pool 구성)
- (특화분야 운영) 특화분야 주관기관은 지원 대상을 고려하여 창업 프로그램(필수 2개 이상 + 자율 3개 이상) 운영
 - * 특화분야 창업프로그램 예시 : 여성 과학기술인 창업컨설팅, 여성 창업기업 네트워킹, 소셜벤처 판별 컨설팅,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전 등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주관기관 배정예산 구성(안) >

구 분	지원내용	예산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분야 주관기관 : 32명 내외 * 특화분야 주관기관 : 100명 내외 	일반분야 : 16억원 내외 특화분야 : 50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전담멘토,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발굴 등	3.8억원 내외
전담조직 운영비	• 인건비, 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예산은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매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은 예비창업자 모집 마감 후 신청 접수율 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서류 평가	1. 기관 현황 및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의 현황 및 사업참여 의지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현황 등 	20
	2. 창업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지원사업 수행실적 ▶ 창업기업 지원실적 등 	40
	3. 비전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연도별) 비전 및 목표, 전략, 계획 ▶ 창업기업 발굴 및 관리계획 ▶ 예비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40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자금 (현금) 조성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상 1점, 2억원 이상 2점 ▶ 투자재원 조성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원 이상 1점, 3억원 이상 2점, 4억원 이상 3점 	(최대) 5
합 계			105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발표 평가	1. 비전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연도별) 비전 및 목표, 전략, 계획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 	15
	2. 창업기업 발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발굴 및 생존을 제고, 부정수급 예방, 만족도 제고 방안 등 ▶ 창업기업 및 사업 성과관리 방안 등 	15
	3. 프로그램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프로그램 운영계획 ▶ 자율 프로그램 운영계획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60
	4. 사업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집행계획 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안)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참 고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기술보증기금)

* 소셜벤처기업은 ①사회성 판별표와 ②혁신성장성 판별표를 적용하여 판별하여, 판별표에 의한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 기업으로 분류한다. 단, 향후 정책에 의하여 판별기준은 변경 될 수 있음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①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¹⁾ 되어 있고, 추진 ²⁾ 중인 기업	50점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 ³⁾ 은 50%만 인정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 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글로벌 기관,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점

구 분	2번 항목 판별근기 입력
◆ 사회적 문제 ¹⁾ 해결	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K-SDGs 세부목표와 연계)
◆ 제품,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근거를 간략히 기술 (사업계획서, 특히 공개전문 ²⁾ ,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가자 직접 확인)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주)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태

주)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

1)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2) 관련 충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충빙 없이 점수 부여)

3)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②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⁴⁾ 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 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⁵⁾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⁶⁾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 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5점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 개발 금액 ⁷⁾ 으로 확인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점

- 4)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나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 5)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정체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 6)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 개발비 - 전기 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증가액 + 재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 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 사업 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성장 도모

□ 선정 규모 : 총 20개 내외

<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규모(안) > (단위 : 개)

권역	서울권	경인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규모	4	4	4	3	2	3	20

- * 선정평가 결과 및 권역(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역별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운영 기간 : '23년 ~ '26년 (4년간, 2년+2년)

-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연 단위 협약 기간 15개월 내외)

□ 신청요건

① 초기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 (대응자금) 매년 1억원 이상의 대응자금을 투입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초기창업기업 지원

* 대응자금 의무 투입금액은 연차별로 증감할 수 있음

- 대응자금 총액 중 8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투입해야 하며, 필요시 20% 이하는 사무실 임차료 등 현물*로 대응 가능

* 주관기관 협약 기간 내 전담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가능

< 대응자금 구성 비율 (예시) >

현금(A)	현물(B)	합계(C=A+B)
80백만원 이상 (80%~100%)	20백만원 이하 (20%~0%)	100백만원 (100%)

- (투자재원) 매년 3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선정된 창업 기업에 대해 투자 실행

- 주관기관이 자체 조성하거나 민간 VC 등을 통해 초기창업패키지 전용 투자재원을 운용하는 경우 인정

* 조성된 투자금은 당해연도에 선정된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에 투자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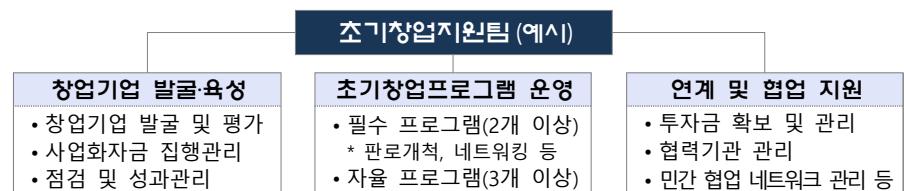
※ 내·외부 재원 투입 시, 협약 기간 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기업)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 대응자금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보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 재원을 미확보하는 경우 주관기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② 초기창업패키지 전담조직 설치 · 운영

- (전담조직 설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 (팀, 부서 등)을 설치 · 운영

- 초기창업기업 발굴, 초기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운영 기능을 전담
-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필수 구축 ($33m^2$ (10평) 이상)



-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의 장(1인)과 전담인력(4인 이상)으로 구성

- 전담조직의 장 :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주관기관의 장)로서 창업(또는 창업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4인 이상 필수 구성하고, 그 중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60% 이상 구성

* 전담인력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을 의미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①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 초기창업기업 선정평가, 사업화 자금 집행관리·정산, 점검, 성과 평가, 지원종료 후 추적관리 등

② 초기창업프로그램 운영 (필수 2개 이상 + 자율 3개 이상)

- (필수 프로그램) 3개 유형 (①시장진입, ②초기투자유치, ③실증·검증)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유형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예시 : ①시장진입(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연계, 글로벌연계), ②초기투자유치(투자교육, IR), ③실증검증(멘토링, 기술실증)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 프로그램 3개 이상 운영

* 프로그램 예시 : 대기업 연계 초기창업기업 소비자상담회

** 단순 행사, 외부 용역사 일임, 기관 간 네트워크 등 일차원적 프로그램은 지원하고 초기창업기업의 “기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고도화된 운영 방법 및 지원내용 제시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주관기관 배정예산 구성(안) >

구 분	지원내용	예산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 초기창업기업 사업화자금 (30개사 내외)	총 21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억원 내외
전담조직 운영비	•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등	

*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예산은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매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 모집 마감 후 신청 접수율 등을 감안하여 주관 기관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서류 평가	1. 기관 현황 및 인프라	▶ 신청기관의 현황 및 사업참여 의지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현황 등	20
	2. 창업지원 실적	▶ 창업 지원사업 수행실적 ▶ 창업기업 지원실적 등	40
	3. 비전 및 계획	▶ 중장기(연도별) 비전 및 목표, 전략, 계획 ▶ 창업기업 발굴 및 관리계획 ▶ 초기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40
	가점	▶ 대응자금 (현금) 조성 규모 * 1.5억원 이상 1점, 2.5억원 이상 2점 ▶ 투자재원 조성 규모 * 4억원 이상 1점, 5억원 이상 2점, 6억원 이상 3점	(최대) 5
합 계			105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발표 평가	1. 비전 및 추진전략	▶ 중장기(연도별) 비전 및 목표, 전략, 계획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	15
	2. 창업기업 발굴·관리	▶ 창업기업 발굴 및 만족도 제고 방안 ▶ 창업기업 및 사업 성과관리 방안 등	15
	3. 프로그램 운영계획	▶ 필수 프로그램 운영계획 ▶ 자율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60
	4. 사업비 구성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집행계획 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안)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창업도약패키지

□ 사업 목적

-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테스밸리 극복 및 스케일업 촉진

□ 선정 규모 : 총 13개 내외

<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규모(안) > (단위 : 개)

권역	서울권	경인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규모	2	3	2	2	2	2	13

- * 선정평가 결과 및 권역(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역별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운영 기간 : '23년 ~ '26년 (4년간, 2년+2년)

-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연 단위 협약 기간 15개월 내외)

□ 신청요건

① 도약기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 (대응자금) 매년 1억 원* 이상의 대응자금을 투입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도약기창업기업 지원

* 대응자금 의무 투입금액은 연차별로 증감할 수 있음

- 대응자금 총액 중 8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투입해야 하며, 필요시 20% 이하는 사무실 임차료 등 현물*로 대응 가능

* 주관기관 협약 기간 내 전담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가능

< 대응자금 구성 비율 (예시) >

현금(A)	현물(B)	합계(C=A+B)
80백만원 이상 (80%~100%)	20백만원 이하 (20%~0%)	100백만원 (100%)

- (투자재원) 매년 10억 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선정된 창업 기업에 대해 투자 실행

- 주관기관이 자체 조성 또는 민간 VC 등을 통해 창업도약패키지 전용 투자재원을 운용하는 경우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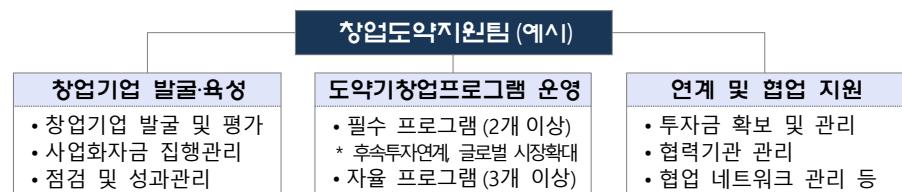
- * 조성된 투자금은 당해연도에 선정된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에게 투자되어야 함
※ 내·외부 재원 투입 시, 협약기간 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기업)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 또는 공문 제출

- * 대응자금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보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 재원을 미확보하는 경우 주관기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② 창업도약패키지 전담조직 설치 · 운영

- (전담조직 설치)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 (팀, 부서 등)을 설치 · 운영

- 도약기창업기업 발굴, 도약기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도약기창업기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운영 기능을 전담
-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필수 구축 (33m²(10평) 이상)



-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의 장(1인)과 전담인력(4인 이상)으로 구성

- 전담조직의 장 :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주관기관의 장)로서 창업(또는 창업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4인 이상 필수 구성하고, 그 중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60% 이상 구성

* 전담인력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을 의미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① 도약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 도약기창업기업 선정평가, 사업화 자금 집행관리·정산, 점검, 성과 평가, 지원종료 후 추적관리,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선정 주관기관의 50% 이상) 운영 등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 평가 절차 및 세부 방식은 추후 별도 안내

② 도약기창업프로그램 운영 (필수 2개 이상 + 자율 3개 이상)

- (필수 프로그램) 2개 유형(①후속 투자유치, ②글로벌시장 확대)별로 각 1개 이상(총 2개 이상)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 ① 후속투자 유치 : 도약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예시 :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사항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 ② 글로벌시장 확대 : 해외 고객수 증가, 해외 VC 투자 연계 등
 도약기창업기업의 글로벌시장 확대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예시 :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자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자율 프로그램) 신청기관의 강점·전문성, 도약기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3개 이상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에는 '기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고도화된 운영 방법과 지원내용을 포함

* 단, 직접적으로 창업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은 운영 불가하고, 전시회 부스 참가나 외부 용역사 위탁을 통한 단순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주관기관 배정예산 구성(안) >

구 분	지원내용	예산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 도약기창업기업 사업화자금(30개사 내외)	총 37.5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억원 내외
전담조직 운영비	•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등	

*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예산은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매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여부, 창업기업 모집 마감 후 신청 접수율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서류 평가	1. 기관 현황 및 인프라	▶ 신청기관의 현황 및 사업참여 의지 ▶ 창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및 활용현황 등	20
	2. 창업지원 실적	▶ 창업 지원사업 수행실적 ▶ 창업기업 지원실적 등	40
	3. 비전 및 계획	▶ 중장기(연도별) 비전 및 목표, 전략, 계획 ▶ 창업기업 발굴 및 관리계획 ▶ 도약기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40
	가점	▶ 대응자금(현금) 조성 규모 * 1.5억원 이상 1점, 2.5억원 이상 2점 ▶ 투자재원 조성 규모 * 15억원 이상 1점 20억원 이상 2점 25억원 이상 3점	(최대) 5
합 계			105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발표 평가	1. 비전 및 추진전략	▶ 중장기(연도별) 비전 및 목표, 전략, 계획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	15
	2. 창업기업 발굴·관리	▶ 창업기업 발굴 및 관리계획 ▶ 창업기업 수요 반영 방안 등	15
	3. 프로그램 운영계획	▶ 필수 프로그램 운영계획 ▶ 자율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60
	4. 사업비 구성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집행계획 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안)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